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42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조세탈루제보자 포상금의 지급 한도 상향(최은석의원안)	3

I. 개요

1.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42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8. 27.
- (3) 회 부 일 : 2025. 8.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능화·은밀화되는 탈세행위로 인하여 탈세거래를 차단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로 탈세 제보가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18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높여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40억원의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4조의2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조세탈루제보자 포상금의 지급 한도 상향(최은석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포상금의 지급(제84조의2) ○ 지급대상 -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공제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 신용카드 결제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신고한 자 - 현금영수증의 발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발급을 신고한 자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등 ○ 지급 제외 - 해당 위법행위의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 지급 한도 - <u>조세탈루제보자: 40억원</u> - 체납자의 은닉재산신고자: 30억원 -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자: 20억원	☐ 포상금의 지급 한도 상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지급 한도 - <u>조세탈루제보자: 100억원</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

* 최은석의원안 2025. 8. 27. 발의(의안번호 12426)

□ 개정안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법에서는 조세탈루 등 조세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조세탈루제보자에게는 40억원, 체납자의 은닉재산신고자에게는 30억원,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또한,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 가. 법인
 - 나. 복식부기의무자

우²⁾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규정은 2003. 12. 30. 개정시 신설되었으며, 기존에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탈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상 범칙 조사를 받아 처벌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규정한 바 있음³⁾.

현재는 「국세기본법」의 위임을 받아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⁴⁾에서 포상금의 지급 요건, 지급률,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⑦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3)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제6071호)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처벌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것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이에 따라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아래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최대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조세탈루제보 포상금 지급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

탈루세액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한편, 최근 조세탈루제보 포상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탈루세액이 20억원 또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탈세 건에 대한 제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임.

[조세탈루제보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2019	9,196	372	3,788	34	500	2	1,480	2
2020	10,924	416	3,289	26	594	2	1,315	4
2021	9,049	357	4,033	32	509	2	449	1
2022	9,125	333	4,055	33	594	2	1,178	4

구분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2023	10,453	383	4,410	42	1,545	6	1,145	4
2024	7,116	275	4,032	28	642	2	2,049	5

자료: 국세청

□ 그러나, 포상금 지급 한도액 및 지급률이 낮을 경우 고액 탈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보 유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인 탈세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탈세제보에 대해 다른 유형보다 높은 포상금 한도액을 적용하였고, 2018년에는 최대 지급한도를 40억원까지 상향한 바 있음.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 인상 추이]

구분	종전	2013	2014.1.	2014.12.	2018	2021
탈세제보	1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40억원	40억원
은닉재산 신고				20억원	20억원	30억원
신용카드 부정 신고					20억원	20억원
현금영수증 부정 신고						
차명거래 등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제보						

주: 탈세제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국세기본법 시행령) : 2~5%(이전) → 2~5% 또는 5~15%(탈세제보)(2012. 2.) → 5~15%(2013. 6.) → 5~20%(2018. 2.)

□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은 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탈세

제보를 통해 탈세행위를 징벌 및 방지하도록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탈세 행위 수법이 갈수록 정교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자료 분석, 업종별 특성에 대한 이해, 현장 정보 확보 등 세무공무원의 고도의 전문성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국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탈세 정황에 대한 실질적 단서 제공이 가능한 제보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기업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이 까다로워지고, 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제도적 단속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보자가 고위험을 감수하며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유인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탈루 제보 포상금 한도는 2018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탈세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제보 유인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5년간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규모를 살펴보면, 미수납액은 2020년 40조 9,254억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3년 59조 8,291억원, 2024년에는 67조 7,746억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임.

[최근 5년간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수납액	409,254	439,840	516,586	598,291	677,746
불납결손액	38,526	43,649	18,155	22,771	19,071

자료: 국세청

특히, 미수납액 발생 사유 중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소득 축소 또는 허위 신고 등 탈세 행위로 인해 과세 자체가 누락되었거나, 과세가 이루어졌더라도 법적 다툼이나 정보 부족으로 징수가 어려운 사례가 하나의 요인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2024년도 각 세목별 국세 미수납액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납기 미도래	납부기한 등 연장	정리유예	채납자 무재산	기타
합 계	677,746	30,309	15,220	24,944	607,231	42
소득세	292,115	12,505	8,191	8,236	263,183	-
법인세	81,066	2,889	2,469	3,279	72,429	-
상속·증여세	25,593	1,415	861	6,528	16,747	42
부가가치세	257,770	10,895	2,379	5,960	238,536	-
기타	21,202	2,605	1,320	941	16,336	-

자료: 국세청

[2024년도 각 세목별 국세 불납결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합계	소멸시효완성	납부의무면제	강제징수종료
합 계	19,071	18,567	11	493
소득세	7,314	7,192	2	120
법인세	2,537	2,516	-	21
상속·증여세	399	277	-	122
부가가치세	8,624	8,387	9	228
기타	197	195	-	2

자료: 국세청

둘째, 포상금 한도액을 상향할 경우 전체 탈세제보 신고 건수와 과세 활용 건수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실제로 2018년 포상금 한도액을 기존 30억원에서 40억원로 상향 조정한 결과 탈세제보 접수 건수와 과세활용 건수, 그리고 고액 추정 제보가 다음 해까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7년~2019년 탈세제보 접수·과세활용·고액 추정 제보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2017	2018	증감(%)	2019	증감(%)
탈세제보 접수 건수		15,628	20,319	+30.0	22,444	+10.5
과세활용 건수		3,546	4,035	+13.8	4,416	+9.4
고액 추정제보 (1억원~50억원)	건수	808	822	+1.7	915	+11.3
	세액	4,434	4,084	△7.9	5,093	+24.7

자료: 국세청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실제 포상금 지급 수준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제한적이고, 다른 포상금 제도에 비해 지급한도가 낮지 않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지급건수 및 포상금액수)]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조세탈루 관련 주요자료 제공 (제1호)	지급건수	448	392	372	435	310
	지급금액	16,122	14,040	14,952	17,553	13,839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제2호)	지급건수	31	27	35	38	20
	지급금액	1,206	1,423	1,477	1,872	948
신용카드 결제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제3호 및 제4호)	지급건수	4,244	3,215	3,394	4,131	3,283 (잠정)
	지급금액	338	263	263	320	247 (잠정)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제4의2호)	지급건수	7,687	9,810	13,067	16,886	15,643 (잠정)
	지급금액	2,031	2,579	3,650	4,551	4,175 (잠정)
명의위장 신고 (제5호)	지급건수	48	21	21	31	22
	지급금액	48	21	37	62	4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위반 제보 (제6호)	지급건수	-	-	-	-	-
	지급금액	-	-	-	-	-
타인 명의 금융자산 신고 (제7호)	지급건수	1,784	1,434	1,314	1,099	704
	지급금액	1,782	1,434	1,314	1,099	704
합계	지급건수	14,242	14,899	18,203	22,620	19,982
	지급금액	21,527	19,760	21,693	25,457	19,957

자료: 국제청

실제 포상금 지급금액이 소액이므로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 적용 사례⁵⁾가 없고,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최대 30억원 수준임.⁶⁾

둘째, 현재 다른 신고 포상금 제도의 지급 한도가 20억~30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조세탈루 제보에 대해서만 최대 100억원까지 한도를 상향할 경우 타 제보 제도와의 형평성 저해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포상금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내부정보를 악의적으로 남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 제보를 통해 포상금을 노리는 행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현재 「국가재정법」 제49조⁷⁾ 및 「예산성과금 규정」에 근거한 ‘예산성과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예산성과금 제도는 제도개선이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 절감 또는

5) 2024년의 경우 조세탈루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총 138억 3,900만원이고, 1건당 평균 지급액은 4,464만원 수준임.

6)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 5억원,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 신고 30억원, (공정거래법) 계열회사 누락 5억원, 부당 지원행위 20억원, 부당 공동행위 30억원 등임.

7) 「국가재정법」

제49조(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절약된 예산의 다른 사업에의 사용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일반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명당 최대 지급한도를 6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탈루 제보 포상금의 한도 역시 다른 유사 제도들과의 균형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⁸⁾

[국세청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신청건수(A)	21	36	21	26	25
지급건수(B)	6	12	11	9	11
지급금액	62	114	70	66	110
지급비율(B/A)	28.6	33.3	52.4	34.6	44.0

자료: 국세청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실제 포상금 지급 수준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제한적이며, 다른 신고 포상금 제도와 비교하여 지급한도가 최고 수준이므로 포상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8) 「예산성과금 규정」

제16조(예산성과금의 규모) ①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명당 6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으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②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하되, 1명당 6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130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당 지급액은 7천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유사 사업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2.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에 따른 행정협업과제를 통하여 나타난 경우
3.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직전 회계연도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평가 대상에 해당하여 나타난 경우
4.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제안,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신고 또는 제안을 통하여 나타난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47
